

의안번호	2202931
의 퇴 인	허영 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 계 번호	24B298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31조의3(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 신설	유역 관계 시·도지사는 원활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별로 유역관리기금을 설치함(제1항)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취수부담금 및 가산금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용료·점용료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가.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등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유역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유역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유역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제3항) 1. 유역별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 2.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공급·이용·배분 3.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 4.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유역 물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제4항) 그 밖에 유역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1조의3 (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유역관리기금의 설치 등(안 제31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¹⁾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유역관리기금 조성) 유역관리기금은 취수부담금,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취수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수자원 사용 시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1) 안 제31조의2(취수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자원의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취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수도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수(流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수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취수부담금을 제31조의3에 따른 유역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징수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취수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비율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향후 징수하게 될 취수부담금 및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규모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며, 기금의 수입 규모 및 지출 규모에 따른 수지차를 추정할 수 없어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할 출연금의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현재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징수액은 9,315억원임

※ [참고자료] 물이용부담금 개요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물이용부담금 개요²⁾

□ 물이용부담금 개념

- (기본개념) 상류지역 규제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 주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
- (부과대상)
 -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정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 (면제대상)
 -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측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 부과 및 징수 방법 등

- (부과금 산정) 물사용량(취수량) × 부과요율(170원/톤)
- (부과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 후 수계위 납입
 - 전용수도·하천수 사용자: 수계위에서 부과·징수

□ 물이용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24,272	905,577	918,670	921,969	931,547
한 강	476,519	476,702	476,342	473,639	478,841
낙동강	238,887	221,991	222,768	226,987	234,932
금 강	121,860	120,206	127,157	127,682	127,458
영산강	87,006	86,678	92,403	93,661	90,316

2)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4대강 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액(2019~2023년³⁾)

○ 4대강수계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1,184,405	1,200,867	1,219,430	1,210,472	1,208,945
물이용부담금	924,272	899,818	918,670	921,969	931,547
가산금	1,283	1,044	991	907	901
기타경상이전수입	34,654	26,401	48,738	38,621	34,638
기타 수입	13,257	4,721	7,379	3,800	7,935
여유자금 회수	210,939	268,883	243,652	245,175	233,924

○ 한강수계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672,211	684,344	681,736	639,207	620,357
물이용부담금	476,519	470,943	476,342	473,639	478,841
가산금	837	656	624	562	545
기타경상이전수입	16,762	13,067	33,570	21,570	22,600
기타 수입	10,323	2,651	2,833	1,558	2,922
여유자금 회수	167,770	197,027	168,367	141,878	115,449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269,927	250,675	244,126	241,537	243,380
물이용부담금	238,887	221,991	222,768	226,987	234,932
가산금	236	209	198	185	192
기타경상이전수입	5,876	6,182	6,522	8,110	3,762
기타 수입	1,619	348	2,161	392	878
여유자금 회수	23,309	21,945	12,477	5,863	3,616

3) 환경부 제출자료

○ 금강수계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137,866	151,220	161,803	176,923	185,162
물이용부담금	121,860	120,206	127,157	127,682	127,458
가산금	134	115	112	103	109
기타경상이전수입	5,374	5,547	4,787	3,000	3,553
기타 수입	261	1,100	495	477	3,232
여유자금 회수	10,237	24,252	29,252	45,661	50,810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104,401	114,628	131,765	152,805	160,046
물이용부담금	87,006	86,678	92,403	93,661	90,316
가산금	76	64	57	57	55
기타경상이전수입	6,642	1,605	3,859	5,941	4,723
기타 수입	1,054	622	1,890	1,373	903
여유자금 회수	9,623	25,659	33,556	51,773	64,049